

(앞 면)

제 호	사 진 (2cm × 3cm)
의연금품 모집 검사 공무원증	
소 속:	
직 위:	
성 명:	
생년월일:	
「재해구호법」 제2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연금품모집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	
년 월 일	
행정안전부장관	직인

74mm×52mm[백상지(150g/㎡)]

(뒷 면)

주 의 사 항
1. 이 검사공무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합니다.
2. 의연금품의 모집검사를 목적으로 모집자의 사무소·모집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공무원증을 내 보여야 합니다.